



2012. 9.

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안의 5건 심사 보고서

세종특별자치시의회
(의회운영위원회)

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안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2년 8월 17일, 김정봉의원외 3인
- 나. 회부일자 : 2012년 8월 23일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2년 8월 30일 (제3회 임시회 제1일차 의회운영위원회)

2. 제안설명 요지(의원 김정봉)

가. 제안이유

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·방법 등에
필요한 사항을 정함.

나. 주요골자

- 가. 의회가 행하는 포상의 적용대상과 포상권자에 관하여 규정함
(안 제2조 및 제3조)
- 나. 포상의 종류와 그에 따른 포상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(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)
- 다. 포상의 시기 및 방법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 및 제9조)

- 라. 포상대상자에 대한 공적예비심사와 공적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0조 및 제11조)
- 마. 포상을 등재하는 포상대장의 비치 등 그 관리에 관하여 규정 함(안 제12조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변영호)

- 검토결과 조례제정 취지와 절차, 상위법령 저촉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.

4. 질의·답변 : 없음

5. 토론 : 없음

6. 심사 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2년 8월 17일, 김장식의원외 3인

나. 회부일자 : 2012년 8월 23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2년 8월 30일 (제3회 임시회 제1일자 의회운영위원회)

2. 제안설명 요지(의원 김장식)

가. 제안 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
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·장애·상해 등의
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.

나. 주요 내용

가. 용어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함(안 제2조)

나. 보상금의 지급범위와 지급기준 및 장애와 상해의 기준에
관하여 규정함(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)

다. 보상금의 청구자 등과 지급결정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
규정함(안 제6조 및 제7조)

라.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설치·기능·구성 및 회의 등에
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변영호)

○ 검토결과 조례제정 취지와 절차, 상위법령 저촉 등의
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.

4. 질의·답변 : 없음

5. 토론 : 없음

6. 심사 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안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2년 8월 17일, 박성희의원외 3인
나. 회부일자 : 2012년 8월 23일
다. 삼정 및 의결일자 : 2012년 8월 30일 (제3회 임시회 제1일차 의회운영위원회)

2. 제안설명 요지(의원 박성희)

가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38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 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.

나. 주요 내용

- 가. 의원이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2조)
 - 나. 의원이 윤리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실천해야 할 윤리실천규범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3조)
 - 다.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의원의 행위에 대하여 윤리특별위원회가 윤리심사를 처리하도록 하는 등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
라. 의원의 겸직신고 등에 관한 사항과 영리행위의 제한에
관하여 규정함(안 제5조 및 제6조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변영호)

- 검토결과 조례제정 취지와 절차, 상위법령 저촉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으나,
- 본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안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윤리심사 절차 및 방법등에 관한 시행규칙을 조속히 제정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.

4. 질의·답변 : 생략

5. 토론 : 없음

6. 심사 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세종특별자치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2년 8월 17일, 박성희의원외 3인
- 나. 회부일자 : 2012년 8월 23일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2년 8월 30일 (제3회 임시회 제1일자 의회운영위원회)

2. 제안설명 요지(의원 박성희)

가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사무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행하는 감사와 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.

나. 주요 내용

- 가.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하게 하고, 감사기간 및 감사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(안 제2조)
- 나. 행정사무조사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3조)
- 다.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과 대상사무를 규정함(안 제5조 및 제6조)
- 라.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, 장소 및 공개원칙과 의회사무처 직원

의 사무보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7조부터 제10조 까지)

- 마. 본회의,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,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, 관계공무원 등을 증인으로 선서·증언하게 하거나,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1조)
- 바.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·진술을 하기 위하여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14조)
- 사. 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척 및 회피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15조)
- 아.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함(안 제17조)
- 자.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결과를 처리하도록 규정함(안 제18조)
- 차.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사람과 증인으로서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·방법을 규정함(안 제19조)
- 카. 선서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된 때에는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20조)
- 타.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

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주의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21조)

파. 조사위원회의 존속기간을 명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22조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변영호)

○ 검토결과 조례제정 취지와 절차, 상위법령 저촉 등의 제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.

4. 질의·답변 : 없음

5. 토론 : 없음

6. 심사 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안

심사 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2년 8월 17일, 진영은의원외 3인
- 나. 회부일자 : 2012년 8월 23일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2년 8월 30일 (제3회 임시회 제1일자 의회운영위원회)

2. 제안설명 요지(의원 진영은)

가. 제안이유

세종특별자치시 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
국외정보 및 자료의 수집·조사 등을 위한
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임.

나. 주요 내용

- 가. 자매결연 체결 등 국제행사에 참여 할 수 있는 공무국외활동
의 범위를 규정함(안 제2조)
- 나. 국외활동의 허가 및 국외활동계획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
규정(안 제3조 및 제4조)
- 다. 공무국외활동 계획의 효율적 심의를 위한 심의회 설치 및

구성과 심의회의 기능, 참석위원에 대한 실비지급에 관한
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)

라. 국외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및 의정활동 자료활용 방안과
사후관리 등에 관한사항 규정함(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변영호)

- 검토결과 조례제정 취지와 절차, 상위법령 저촉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

4. 질의·답변 : 없음

5. 토론 : 없음

6. 심사 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2년 8월 27일, 김장식의원외 3인
- 나. 회부일자 : 2012년 8월 27일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2년 8월 30일 (제3회 임시회 제1일차 의회운영위원회)

2. 제안설명 요지(의원 김장식)

가. 제안이유

세종특별자치시 의회의원에 대한 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.

나. 주요 내용

- 가. 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2조)
- 나.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일과 계산방법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3조)
- 다. 의원의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- 라.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소속공무원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함(안 제5조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변영호)

- 검토결과 조례제정 취지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으나,
- 부칙(안)에서의 소급효 규정은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금지하고 있는 통상적인 입법관례에 비추어 배치된 입법으로 보아지지만,
- 본 소급효 규정이 특별히 제3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고, 당사자에게는 이익을 가져다 주는 규정안으로 판단되어,
- 비록, 입법기술은 다소 미흡하지만, 세종시출범 등으로 제반 행정절차의 긴박한 진행 등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었나 생각되어지며, 크게 문제시 되지는 않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 .

4. 질의·답변 : 없음

5. 토론 : 없음

6. 심사 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